

행 정 자 치 부

징계 · 시정 요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경기도 본청,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의정부시, 광명시, 김포시,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

징계 대상자 화성시 ○○○(전 화성시 ○○○) 지방○○○○○(전 지방○○○○○)
○○○

징계 종류 중징계

징 계 내 용

지방○○○○○ ○○○은 2011. 7. 1.부터 2015. 1. 2.까지 ○○업무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격려금으로 지급할 업무추진비를 채주에게 일부 미지급 및 미지급금의 사적 관리·사용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며,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는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방침을 받아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7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I 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의 규정에 의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2013. 2. 7, 2013. 9. 16, 2014. 1. 28, 2014. 9. 4. 총 4회 10,600천원(1인당 500천원 2회, 1인당 300천원 2회)을 시장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면서 1인당 500천원을 지급한 7,000천원 중 1인당 300천원으로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19명에 대하여 4,200천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80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2,800천원에 대하여는 ○○○이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2. 축의·부의금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업무추진비 중 축의·부의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1. 8호 나목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

제Ⅳ장 4-1.에 따라 결혼 또는 사망인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후보자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는 본청 직원 또는 소속 차하급기관의 대표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는 본청·지방의회·사업소 소속 상근직원(시·군·구의 경우는 읍·면·동 직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공공기관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부의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 본청,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의정부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 5월 말까지 축의·부의금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면서 【표 1】과 같이 794건, 39,070천원을 지급 대상자가 아닌 언론관계자 등에 부적정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1】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 대상자 부적정 집행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축·부의금 집행 부적정		구 분	축·부의금 집행 부적정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9개 기관	794	39,070	화성시	2	150
경기도 본청	73	3,650	의정부시	19	930
수원시	4	200	광명시	1	50
성남시	165	8,300	의왕시	6	300
부천시	454	21,940	하남시	70	3,550

※ 자료 :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3. 공무국외출장 격려금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업무추진비 중 소속 상근직원에게 격려 및 지원을 위해 격려금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에 의거 아래에서 명시한 별표 1. 6호²⁹⁾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사업소와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
-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라. 소속 상근직원 중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정차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어업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 마.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도의 경우 시·군·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그러나, 경기도 본청,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의정부시, 광명시, 포천시, 하남시, 여주시는 2013년부터 2016년 5월 말까지 소속 상근직원의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하여 해당 소속 상근직원에게 국외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위의 직무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별도의 격려금을 【표 2】와 같이 171건, 43,350천원을 부적정 집행한 사실이 있다.

29)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직무활동 범위

[표 2] 공무국외출장 격려금 부적정 집행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격려금 집행 부적정		구 분	격려금 집행 부적정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9개 기관	171	43,350	의정부시	132	36,250
경기도 본청	1	600	광명시	1	100
성남시	9	1,850	포천시	14	2,950
고양시	1	50	하남시	3	600
부천시	2	150	여주시	8	800

※ 자료 :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4. 언론관계자 등 격려금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에 의거 아래에서 명시한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격려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 1호 가. 다른 지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1호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3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게 격려금품 지급
- 3호 나. 공연단, 악단, 영화·연극단, 예술단, 학술단체, 사물놀이단, 합창단, 공공기관, 언론기관 및 시범단체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공연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 3호 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5호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 5호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 5호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 6호 나.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 6호 다.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6호 라. 소속 상근직원 중 수로원, 청사방호원, 주·정차단속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그린벨트 단속원, 하천감시원, 환경미화원, 병원선 및 불법어업감시선 근무자,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 6호 바.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 6호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시·도의 경우 시·군·구를 포함한다)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 7호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그리고 같은 규칙 [별표 1] 2호 가목³⁰⁾ 및 라목³¹⁾에 따라 언론관계자에게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및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장 4-1.에 따르면 같은 규칙 [별표 1] 2호 가목의 언론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은 해당자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 안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물품으로서 공산품도 포함되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양평군은 2013년부터 2015년 1월 말까지 언론관계자 및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위의 직무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격려금을 【표 3】과 같이 14건, 3,250천원을 부적정 집행한 사실이 있다.

30)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31)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표 3] 격려금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격려금 집행 부적정		구 분	격려금 집행 부적정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4개 기관	14	3,250			
안성시	5	800	의왕시	2	1,600
포천시	6	650	양평군	1	200

※ 자료 :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5. 축의·부의금 집행 예산과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업무추진비 중 축의·부의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Ⅳ장 4-1.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 본청, 광명시, 김포시, 포천시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소속 상근직원 등에게 축의·부의금을 집행하면서 【표4】와 같이 16건, 1,150천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아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4] 축·부의금 부적정 집행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축·부의금 집행 부적정		구 분	축·부의금 집행 부적정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4개 기관	16	1,150			
경기도 본청	9	450	김포시	1	50
광명시	2	100	포천시	4	550

※ 자료 :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6. 업무추진비 접대성 경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의거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

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안산시, 포천시, 여주시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사용하면서 【표5】와 같이 50만원 미만으로 분할 결제하였으며, 또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미기재한 사실이 있다.

【표5】접대성경비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단위 : 건, 천원)

구분	카드사용일시		카드사용액	합산 사용액	사 용 처	
	승인일자	승인시간			업소명	소재지
계			11,991	11,991		
안산시	소계		8,353	8,353		
	2014.11.25	19:42:42	490	2,472	○○○○○○○ ○○	안산시 단원구
		19:43:38	480			
		19:44:18	470			
		19:44:56	460			
		19:56:16	450			
		19:57:59	122			
	2014.11.26	20:42:39	490	970	○○○ ○○○	안산시 단원구
		20:43:08	480			
	2015.1.30	19:40:52	482	537	(주)○○○	서울 서초구
		21:10:08	55			
	2015.5.4	20:08:39	485	531	○○○○○○○(주)○○	안산시 단원구
		20:45:49	46			
	2015.7.9	20:59:35	490	977	(주)○○○○	안산시 중구
		20:59:56	487			
	2015.8.18	12:37:25	450	525	○○○	안산시 상록구
		12:38:07	75			
	2015.9.7	20:41:34	440	522	○○	의왕시 학의동
		20:57:48	82			
	2015.11.9	20:34:36	496	549	○○○○○	안산시 단원구
		20:35:08	53			
	2015.12.24	19:07:37	390	770	○○○○○○○(주)○○	안산시 단원구
		19:08:35	380			
	2015.12.27	19:48:17	300	500	○○ ○○○○	안산시 상록구
		19:48:35	200			
포천시	소계		2,668	2,668		
	2014.7.21	19:13:28	400	550	○○○○	충북 제천시
		19:13:49	150			
	2014.8.22	20:05:15	490	545	○○○○	포천시
		20:05:43	20			

	2015.12.24	20:51:14	35	670	○○○○○	포천시
		21:00:28	480			
		21:00:43	190			
	2015.12.29	21:24:32	480	903	○○○ ○○○	포천시
		21:25:14	423			
여주시	소계		970	970		
	2014.10.11	20:13:05	500	970	○○○○	여주시
		20:13:32	470			

※ 자료 :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7. 신용카드 제한업종 사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주점, 맥주홀, 카페 등 의무적 제한업종³²⁾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고, 주점, 맥주홀 등 의무적 제한업종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사용용도가 불명확한 경비를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용인시, 광주시, 양평군, 연천군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 5월 말까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표6】와 같이 맥주전문점 등 의무적 사용제한업종에서 심야시간에 5건, 881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32) 일반유흥주점 및 무도유흥주점 외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도 의무적 제한 업종에 해당됨

[표6] 신용카드 의무적 제한업종 집행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제한업종 집행 부적정		구 분	제한업종 집행 부적정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4개 기관	5	881			
용인시	1	138	양평군	2	422
광주시	1	280	연천군	1	41

※ 자료 :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8. 격려금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며,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는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침을 받아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7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I 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의 규정에 의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2013.1월부터 2016.3월까지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격려금 목적의 현금으로 총 86건 202,800천원을 집행하고, 부천시에서는 2014. 7. 30, 2014. 11. 10, 2015. 10. 6, 2015. 12. 22. 총 4건 10,200천원을 시장

업무추진비로 현금 집행하면서 기관명, 수령자 성명만을 기재하였을 뿐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이나 집행내역서 등 집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회계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여 공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정당한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는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격려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을 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감사기간(2012. 8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중에 전혀 격려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하여 건전하고 객관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9. 단체장의 휴가기간 중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회계절차이행 등 소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5. 1. 22. 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III-4.(업무추진비)의 규정에 의거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할 때에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단체장의 휴가기간에 단체장을 대신하여 위의 규칙에서 정한 직무활동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집행일시, 대상 등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엄격하고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단체장의 휴가기간(2015. 4. 20.~4. 24, 2015. 8. 3.~8. 7, 2015. 11. 2.~11. 6, 2014. 8. 4.~8. 8)중에 ○○ ○○○○(前 ○○○, 現 ○○○) 등 ○○○ 직원이 단체장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14건,

1,791천원을 집행하면서

회계서류에 집행의 목적 및 대상 등을 명시한 별도의 품의서나 계획서가 없었고, 근무시간 중 인근 지자체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관외 출장명령 조치 없이 출장을 하였으며

위의 14건 중 2014년 5건, 789천원의 경우에는 단체장이 휴가기간 중이었음에도 간담회에 단체장이 참석한 것으로 지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는 등 회계절차이행 및 증빙서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업무추진비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또한,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단체장의 휴가기간(2015. 1. 6, 2015. 8. 3.~8. 7) 중에 ○○ ○○○○, ○○○○○○이 2건, 281천원을 집행하면서 회계서류에 집행의 목적 및 대상 등을 명시한 별도의 품의서나 계획서 없이 작성하는 등 회계절차이행 및 증빙서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업무추진비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화성시장은

[징계] 격려금으로 지급할 업무추진비를 채주에게 일부 미지급하고 미지급금의 사적 관리 및 사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책임을 물어 위 관련자 중 ○○○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성남시장, 부천시장, 화성시장, 의정부시장, 광명시장, 의왕시장, 하남시장은

[시정] 축의·부의금 집행 부적정, 언론관계자 등 격려금 집행 부적정과 관련하여 [표]의 축의·부의금 부적정 집행 건에 대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장, 포천시장, 의왕시장, 양평군수는

[시정] [표3]의 직무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격려금 부적정 집행 건에 대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고양시장, 부천시장, 의정부시장, 광명시장, 포천시장, 하남시장, 여주시장은

[통보] 공무국외출장 격려금 집행 부적정과 관련하여 향후 격려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고, 직무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 광명시장, 김포시장, 포천시장은

[통보] 축의·부의금 집행 예산과목 부적정과 관련하여 향후 축의·부의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어 다른 예산과목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장, 포천시장, 여주시장은

[통보] 업무추진비 접대성 경비 집행 부적정과 관련하여 향후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어 신용카드를 분할 결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장, 광주시장, 양평군수, 연천군수는

[통보] 신용카드 제한업종 사용 부적정과 관련하여 향후 업무추진비에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어 신용카드 의무적 사용제한 업종 및 심야시간에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장은

[통보] 격려금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과 관련하여 향후 격려금 등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 등 회계증빙서류를 징구하고,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격려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방침을 받아 집행하여, 건전하고 객관적인 회계절차이행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장, 광주시장은

[통보] 단체장의 휴가기간 중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회계절차이행 등 소홀과 관련하여 향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한 품의서나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전하고 객관적인 회계절차이행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는

[통보] 성남시의 자료 미제출(단체장 출장현황 등) 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